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년월일 : 2000. 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도민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0이상으로 정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시·군)의 20세이상 주민(시군별 조례로 정함)이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였을 때에
 - 감사청구에 대한 유효서명의 확인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동 심의회는 구성인원과 자격기준이 유사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감사청구 주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장급이상공무원, 감사관
2.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할 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의 임기를 따른다.

②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청구인의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위원장을 포함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⑤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부분발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 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